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등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712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인별로 감정결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를 수정·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는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이 문서감정인의 기본적인 성실성과 윤리성을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원이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인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인으로 구성된 감정인 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상기 예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여 감정인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현행법상 감정인 선정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법규나 경험 법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 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임. 이와 같이 보고된 법규나 경험 법칙 또는 사실 판단을 감정결과(감정의견)라 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명령받은 사람을 감정인이라고 함¹⁾.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335조에서 감정인의 지정 권한을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에게 부여하고 있음²⁾.

가. 감정인 선정의 원칙

감정인의 구체적인 선정 및 관리 절차는 재판예규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이하 “감정예규”라 함)에 규정되어 있음³⁾.

「감정예규」에 따르면⁴⁾ 감정인은 원칙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운영

1)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석,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2.3., p.9.

2)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4조(감정인등 선정의 원칙) ① 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해야 함.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함.

이는 감정인 선정에 있어 소송관계인, 법원, 감정인 사이에 유착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감정의 절차적 중립성·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⁵⁾.

나. 감정인 명단 등재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시가등의 감정, 측량감정, 문서등의 감정, 공사비등의 감정에 관하여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함⁶⁾.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및 『감정촉탁 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다음부터 두 명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감정인 명단 등』’이라고 한다)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 등』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 (감정인의 선정) ① 감정인등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민사사건,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 등에서는 감정인지정결정서 [전산양식 A1780] 및 감정인소환장을, 경매사건에서는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 [전산양식 A3339]를 출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석,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2.3., p.13.

6) 제5조 (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1. 시가등의 감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2. 측량감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
3. 문서등의 감정

감정인 명단 등재 절차를 살펴보면,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감정인후보자 등재 신청을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며, 법원행정처장은 범죄경력조회 및 숙련도 평가(문서등의 감정인에 국한) 결과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각급 법원에 송부하고, 각급 법원은 송부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최종 승인하여 감정인 명단에 등재함⁷⁾⁸⁾.(제5조)

그 외에도 「감정예규」에는 감정인 자격요건, 결격 사유, 명단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⁹⁾.

-
- 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나.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다.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사비등의 감정: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 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 7)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명단 작성절차임.
- 8) 제5조 (감정인 명단) ② 『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 가.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지원실)이 주관하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감정인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다.
 - 나. 법원행정처장은 가목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 다. 법원행정처장은 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
 - 라.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목에 따라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전산양식 A1800)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재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등재 요청한 감정인 후보자를 승인하여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2. 시가등의 감정인
 - 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매년 11. 20.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 나.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별로 추천받은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매년 11. 30.까지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부적격 의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단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두어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제2항),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감정인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제3항), 법원이 감정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와 징계처분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제4항), 그 밖에 감정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5항). 이는 감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u><신설></u>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 <u>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u>

9) 제4조의2 (결격사유), 제5조의2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관리 등), 제6조 (신체감정등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제7조 (감정인 명단 등의 조정 등 절차), 제8조 (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 제9조 (감정인의 선정), 제10조 (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 제11조 (재선정), 제12조 (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 제13조 (감정인 명단의 조정), 제14조 (신체감정등의 방법), 제15조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등), 제21조 (감정인에 대한 지도·감독), 제46조 (감정인등 평정), 제47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 제48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의 관리), 제49조 (감정인 선정 및 감정인 보고 입력) 등

<u><신 설></u>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u><신 설></u>	④ 법원은 감정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와 징계처분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⑤ 그 밖에 감정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 설치(안 제335조제2항)에 대한 검토

현행 「감정예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감정 분야 즉 문서 등의 감정, 시가감정, 측량감정, 공사비등 감정 분야 각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매년 12월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는데¹⁰⁾ 개정안은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감정인 선정관리위원회를 두어 그 자격심사와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55조제2항).

문서 등의 감정인의 의미가 모든 감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감정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등의 감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현행법 제335조제1항에서 감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 같은 조 제2항에서 문서 등의 감정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모든 감정인이 아니라 「감정예규」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등의 감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문서 등의 감정인에 국한하여 그 자격심사 등을 위해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

10) 제2조 (적용범위) ① 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건물, 동산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시가 또는 임료 등에 대한 감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다음부터 '시가등의 감정'이라 한다)
2.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그 밖의 일반측량 등의 측량감정(다음부터 '측량감정'이라 한다)
3. 필적·문서·인영·문자·지문등의 감정(다음부터 '문서등의 감정'이라 한다)
4.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다음부터 '신체감정등'이라 한다)
5. 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다음부터 '공사비등의 감정'이라 한다)

제5조 (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각 호 생략)

를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문서 등의 감정의 경우 「감정예규」에 따르면 그 자격요건을 국가기관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제5조제1항제3호가목),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같은 호 나목),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같은 호 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문서 등의 감정의 경우 다른 감정분야와 달리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등록·공인된 민간자격)이 없음.

< 감정인 명단 등재 자격 >

1. 시가등의 감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2. 측량감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
3. 문서등의 감정
 - 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 나.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 다.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사비등의 감정: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 출처: 「감정예규」 제5조제1항

이에 문서 등의 감정인의 경우 다른 감정인과 달리 단순한 서류심사에서 더 나아가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그 전문성에 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문서 등 감정인이 실질적인 자격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¹¹⁾).

다만,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 검증을 위하여 2023. 7. 20. 「감정예규」를 개정하여 문서 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정인 후보자 자격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¹²⁾ 이와 별도로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문서 등의 감정인 자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 3.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사법정책연구원은 위 보고서에서 문서감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 검증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위원회 설치,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은 숙련도 평가 실시, ③ 평정기준표 개선, ④ 보유시설·장비 기준의 수정,

11)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석,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2.3., p.14·15.

12) 제5조 (감정인 명단)② 『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다. 법원행정처장은 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

제5조의2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관리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실시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명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감정인 명단 조정제도의 활성화, ⑥ 재판장의 감정인 평정 활성화를 제안하였는데 법원행정처는 그 중 숙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¹³⁾.

(2) 감정인 명단 공개(안 제335조제3항)에 대한 검토

현행법상 감정인 명단은 법원 내부에서 관리되며, 감정인의 명단 공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개정안은 문서 등의 감정인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감정인의 명단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감정인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정인의 수준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감정인 전부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문서 등의 감정인 명단만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문서 등의 감정인 명단만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¹⁴⁾ 다른 감정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감정인 명단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 감정인의 사생활 침해 및 공정한

13) 법원행정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신설보다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행정력·예산 낭비를 줄이고 자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숙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14) 안 제335조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두는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이므로 문서 등의 감정인 명단에 국한하여 공개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감정 방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범죄경력 및 징계처분 조회(안 제335조제4항)에 대한 검토

현행 「감정예규」에 따르면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하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감정인후보자 등재신청을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⁵⁾, 개정안은 감정인 후보자에 대해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과 징계처분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감정예규」 제4조의2에서 정한 감정인 명단 등재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및 징계처분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가 필수적이라 볼 수 있음.

< 「감정예규」에 따른 감정인 결격사유 >

제4조의2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5) 제5조(감정인명단) ② 『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가.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지원실)이 주관하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감정인후보자 등재신청을 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은 가목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10.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런데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 사유가 10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며¹⁶⁾ 같은 항 제10호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감정인 후보자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음.¹⁷⁾

16)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법원이 감정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¹⁸⁾.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법원이 감정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와 징계처분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남용 가능성 및 감정인 후보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요청의 목적을 감정인 결격사유 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결격사유는 「감정예규」에 그대로 두면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요청 근거만 법률에 규정할 경우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결격사유 또한 법률로 상향하거나 결격사유에 관한 위임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⁹⁾

17)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주석,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2.3., p.16.

18) 참고입법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 이 성(姓)·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19)참고 입법례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첫째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입법취지에는 수긍할만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 검증을 위하여 숙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 둘째 감정인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입법취지에는 수긍할만한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의 표현만으로는 어떤 감정인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공개 정보 범위의 제한에 관하여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셋째 감정인 후보자 범죄경력조회 및 징계처분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사실조회를 용이하게 하여, 감정인의 도덕성 및 결격사유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